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77호)
- 박균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17호)
- 김용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53호)
- 고민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525호)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50호)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682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3
III . 검토의견	8
1.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 신설(6개 개정안 공통) ...	8
2. 규율대상을 공직자등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민형배 의원안)	27
3. 비실명 대리신고 대리인 요건 완화(정춘생 의원안)	37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신고자 징계·행정처분 감면 규정 준용 (정춘생 의원안)	42

I . 제안경위

【한병도 의원안】

1. 제 안 자 : 한병도의원 등 15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27.

【박균택 의원안】

1. 제 안 자 : 박균택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4. 6. 27.

【김용만 의원안】

1. 제 안 자 : 김용만의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6. 12.
3. 회 부 일 : 2024. 6. 27.

【고민정 의원안】

1. 제 안 자 : 고민정의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4.
3. 회 부 일 : 2024. 6. 27.

【민형배 의원안】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6. 19.
3. 회 부 일 : 2024. 6. 27.

【정춘생 의원안】

1. 제 안 자 : 정춘생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20.
3. 회 부 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병도 의원안】

현행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최근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음에도, 직무관련성이 증명되지 않으면 부정청탁 성립이 어렵고 그 배우자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됨.

이에, 대통령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약속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공직자등에 준하여 처벌함으로써 배우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22조).

【박균택 의원안】

현행법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직무관련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와 같은 공직자등과 그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공직자등과 금품등을 공여했거나 약속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고 있어 공직자등의 금품 등 수수 금지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 위반 시 처벌 대상에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김용만 의원안】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고민정 의원안】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배우자가 공직자의 업무 등에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신고 및 금지하는 의무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는 점은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동 개정안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등을 불법하게 받은 경우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불법적인 금품수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민형배 의원안】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처벌하고자 합니다.

현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을 받으면 공직자등 당사자만 처벌합니다.

최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는 위반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제재 대상은 공직자에 한정하고 김 여사는 공직자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이에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불법으로 금품등을 받으면 배우자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 직계존비속에게도 배우자와 같은 제재 규정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시민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등).

【정춘생 의원안】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가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명품 가방을 수수하는 영상이 공개됐음에도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 한 건의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결시킴.

현행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직접 처벌과 과태료 조항이 부재함. 또한 공익신고자가 대리신고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공익신고자가 자진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직접 감면 요구해야 하는 등 공익신고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정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등의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 등의 청렴의무를 강화하고, 신변 노출을 우려하는 공익신고자가 지정한 대리인을 통해 비실명 공익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공익신고자가 신고 과정에서 발견된 위법행위로 처벌받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등).

Ⅲ. 검토의견

1.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제재 규정 신설 (6개 개정안 공통)

□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본문에서 “「청탁금지법」”이라 함) 제8조¹⁾는 공직자등²⁾의 금품등³⁾ 수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요구·약속을 금지하고 있음.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각 개정안은 이러한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경우, 형벌·과태료 등의 처벌·제재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23조).

[표 1] 배우자 처벌 규정 신설 관련 각 개정안 내용

개정안	처벌 대상	처벌 내용
한병도의원안	▪ 개정안 제8조제6항(신설) 위반 - 「공수처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위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박균택의원안	▪ 현행법 제8조제4항 위반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개정안	처벌 대상	처벌 내용
김용만의원안 고민정의원안 정춘생의원안	▪ 현행법 제8조제4항 중 제1항 관련 위반 - 공직자등(고민정의원안은 공무수행사인 포함)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현행법 제8조제4항 중 제2항 관련 위반 - 공직자등(고민정의원안은 공무수행사인 포함)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민형배의원안	▪ 현행법 제8조제4항 위반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포함)의 배우자로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제8조제4항 위반에 대해 구성요건 구분 없이 형벌과 과태료 모두 규정)

[표 2] 배우자 처벌 규정 신설 관련 각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한병도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⑤ (생략) <u><신설></u>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는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 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u>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5. (생략) <u><신설></u>	제22조(벌칙) ① ----- ----- ----- -----. 1. ~ 5. (현행과 같음) 6. 제8조제6항을 위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박균택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u><신설></u>	제22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u>1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u>
2. ~ 5. (생략) ② ~ ④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김용만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략) <u><신설></u>	제22조(벌칙) ① ----- ----- ----- -----. 1.·2. (현행과 같음) <u>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u>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를 취소한다. 1. · 2. (생략) <u><신설></u>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 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하 다. 3. (현행과 같음) ⑥ · ⑦ (현행과 같음)
고민정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2. (생략) <u><신설></u>	제22조(벌칙)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3. ~ 5. (생략)

② ~ ④ (생략)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이나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2. (생략)

<신설>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3. (생략) ⑥·⑦ (생략)	<u>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u>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

민형배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제22조(벌칙)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 ----- ----- ----- -----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⑥・⑦ (생략)	⑥・⑦ (현행과 같음)
정춘생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22조(벌칙) ① ----- ----- ----- -----. 1. 2. (현행과 같음) <u>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u> <u>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u> <u>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u> <u>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u> <u>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u> <u>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u> <u>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u> <u>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u> <u>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하</u> <u>다.</u>
3. ~ 5. (생략) ② ~ ④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illegible]

1. · 2. (현행과 같음)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
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공직
자등의 배우자.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
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
한다.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는 제반 규정을 두고 있음.⁴⁾

□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도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⁵⁾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 사실을 안 경우 신고 및 반환·거부 의무를 부여함.⁶⁾

□ 이와 같이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하고 신고·반환 의무 등을 부여한 것은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 및 청탁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⁷⁾

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7) 법률 제정 당시 논의 과정(제331회 국회 임시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2015년 3월 3일)에서 배우자에 대한 부분을 이 법에 특별히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일부 위원의 지적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가족을 우회해서 어떤 금품을 주고받는 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이며, ‘배우자가 돈 받은 것이 독자적으로 어떤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상정을 할 수가 있다’면서 배우자에 대한 이 법 적용 필요성을 주장함.

○ 헌법재판소는 현행법 제9조제1항제2호 중 배우자의 금품 수수 행위 등 신고 의무에 관한 규정의 입법취지를 ‘배우자를 통한 금품등 수수의 우회적 통로를 차단하는 한편, 신고라는 면책 사유를 부여’한 것이라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른 효과적인 수단을 상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⁸⁾한 바 있음.

□ 그런데,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및 자신과 배우자에 관련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나,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따로 처벌·제재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와 같이 현행법은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위반한 배우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각 개정안은 금품등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배우자를 처벌대상에 포함시켜 현행 배우자 관련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배우자는 공직자등과 일상을 공유하며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거나 동일한 이해관계 속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을

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결정(2016.7.28. 선고, 2015헌마23)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인식임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행위를 방지함으로써 공직자등의 청렴성 및 직무수행의 공정성, 나아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위의 결정문에서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다만, 현행법은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 등 행위에 대해서 제8조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을, 제8조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공직자등 본인에 대해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객관적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별할 수 있는 경우에만 형벌이 적용되는 구조임.

[표 3] 현행법의 공직자등 금품수수 등 관련 처벌 규정

처벌 대상	처벌 조항
▪ 현행법 제8조제1항 위반 - <u>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 없이</u>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제22조제1항제1호 - <u>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u>

처벌 대상	처벌 조항
▪ 현행법 제8조제2항 위반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위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자 ※ 신고·반환·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외	▪ 제23조제5항제1호 ▪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 그런데, 대부분의 개정안⁹⁾과 같이 직무수행 당사자가 아닌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행위에 대해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직무수행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직무 관련성 여부가 공직자등에 비해 더욱 모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기관의 직무 관련성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가 형벌권이 오·남용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정안 중 한병도의원안은 현행법상 공직자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에 대해서도 직무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이상의 금품등 수수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 경우 직무관련성 판단의 어려움은 해소되나 일반인인 배우자의 사적자치 및 경제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음.

9) 한병도의원안 제외 5개 개정안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공직자등 배우자의 금품수수 등 부패실태 및 심각성, 국민인식 변화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지만,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등 과잉입법 및 연좌제 금지 위반 등의 위헌 소지가 제기될 수 있는바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종합적으로, 공직자등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각 개정안에 대해서는,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청탁 및 금품수수등에 대해 실효적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공직수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와, 직무관련성 요건의 모호성으로 인한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 가능성 및 일반인에 대한 규제 확대 등과 관련한 우려사항을 면밀히 비교형량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규율대상을 공직자등의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민형배 의원안)

□ 개정안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 신고의무 부여, 반환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의무화, 수사기관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하면서, 직계존비속에 대한 형벌 및 과태료 부과도 함께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9조, 제22조, 제23조)

[표 4] 직계존비속에 대한 적용 확대 관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생략)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 ----- ----- ----- ----- -----. ⑤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 ----- ----- -----.

현행	개정안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2.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 -----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 ----- ----- ----- ----- ----- ----- -----.

현행	개정안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 ----- <u>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u> ----- ----- ----- ----- ----- -----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 ----- <u>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u> ----- ----- ----- ----- ----- ----- ----- ----- ----- ----- ----- ----- ----- -----.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	⑦ -----

현행	개정안
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⑧ (생략)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 ⑧ (현행과 같음) 제22조(벌칙) ① ----- -----. 1. (현행과 같음)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배우자나 직계존

현행	개정안
수금지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u>비속이</u> ----- ----- ----- -----.
<u><신설></u>	2의2. 제8조제4항을 위반한 <u>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u> . <u>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금지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u>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금지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3. ----- ----- ----- -----배우자 나 직계존비속에게----- -----
4. 5. (생략)	4. 5.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공정한 직무수행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¹⁰⁾ 및 금품등 수수¹¹⁾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중 금품등의 수수 금지 조항은 직무 수행 주체가 아닌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게도 일부 적용하고 있음.¹²⁾

[표 5] 공직자등 외의 사람(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현행법 규정

조 항	내 용
제8조제4항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함

10) 현행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11) 현행법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 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조 항	내 용
제8조제5항	▪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함
제9조제1항제2호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해야 함
제9조제2항	▪ 공직자등은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해야 함
제9조제4항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제9조제5항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무참여 중지 등 조치 가능
제9조제7항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해야 함

□ 개정안은 현행법상 배우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직무 관련 금품등 수수 금지, 신고의무 부여, 반환 또는 거부의사 표시 의무화, 수사기관 통보 등에 관한 규정을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임.

- 이는 공직자등 본인 및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비위행위를 차단하고,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각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 공직자등의 직계존비속은 경우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가족이라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와 같이 이 법의 규율 대상에 편입한다면 가족을 통한 비위행위를 더욱 강력히 차단하여 공직의 청렴성을 일정 부분 제고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직계존비속의 경우 배우자에 비해 공직자등과 세대 및 경제 단위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공직자등 본인과의 상호 관계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헌법재판소는 배우자의 금품 수수 등에 대한 신고조항을 합헌 결정하면서 ‘본인과 경제적 이익 및 일상을 공유하는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는데,¹³⁾ 직계존비속의 경우에도 배우자와 동일한 정도로 규제와 제재를 하여야 할 만큼 경제적 긴밀도가 배우자와 같다고 볼 수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마목 등 위헌확인 등 결정(2016.7.28. 선고, 2015헌마23)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그리고 현행법에서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금품등¹⁴⁾의 형태는 상당히 다양한데, 직계존비속의 경제·사회 활동 내 사적 거래 행위와 공직자등의 직무와의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음에도 규제 및 제재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할 경우, 직계존비속¹⁵⁾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 침해의 정도가 과잉금지 원칙의 기준¹⁶⁾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공직자등의 직계존비속이 자신의 직장이나 사적 모임 등과 같이 통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제공받는 식사, 선물 등이 청탁금지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인지 여부를 일일이 판단토록 하는 것은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공직자등의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금품등 수수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공직수행의 청렴성·공정성 강화라는 기대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15)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산에 따르면 이 법에서 규율하는 “공직자등”은 약 240만 명으로, 공직자등의 직계존비속의 수는 그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16) 직계존비속에 대한 규제·제재 규정 적용은 과잉금지의 원칙 중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효과에 비해, 수범자의 확대 범위 및 제한 범익이 과도한 것이 아닌지를 심도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 정무위원회의 제정안 원안에는 공직자등 본인 외에 이 법의 규율 대상이 되는 주체를 ‘공직자등의 가족’으로 명시하였다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통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수정하여 제정법률에 반영한 바 있음.

3. 비실명 대리신고 대리인 요건 완화(정춘생 의원안)

□ 개정안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제3자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에 대해, 현행법상 변호사로 제한되어 있는 신고인 요건을 “대리인”으로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표 6] 비실명 대리신고 관련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u>변호사를 선임</u> 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u>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u> 로 갈음한다.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 ----- ----- ----- ----- <u>대리인을 지정</u> ----- ----- ----- ----- <u>대리인</u> ----- ----- <u>대리인이</u> -----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u>변호사</u> 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u>대리인은</u> -----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3조제1항¹⁷⁾은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항은 신고자는 신고의 취지·내용 및 증거 등과 함께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리고, 신고자 자신의 인적사항 노출에 따른 공익적 신고의 위축 또는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 발생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여, 2021년 12월 7일¹⁸⁾ 제13조의2¹⁹⁾를 신설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²⁰⁾에 규정되어 있던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청탁금지법」에 도입하였음.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시행일 2022년 6월 8일

1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국민권익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20)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①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공익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또는 공익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현행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는 신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를 변호사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 없이 지정된 “대리인”을 통하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의 문턱을 낮추고 비실명 공익제보를 활성화하려는 목적에서 발의됨.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가 시행된 2022년 6월 8일 이후 신고 건수를 살펴보면 비실명 대리신고 건수가 일반신고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비실명 대리신고의 요건을 적극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표 7] 「청탁금지법」의 비실명 대리신고 현황

(단위: 건)

구 분	접수건수*	처리**			
		이첩	송부	종결	조사진행중
비실명 대리신고	14	-	9	4	1
일반 신고	256	22	119	123	18

기간: 비실명 대리신고 도입(2022.6.) 이후 2024.8.8. 현재까지

※ * 접수 일자 기준임, ** 처리 일자 기준임

※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 사건은 제외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 다만, 비실명 대리신고는 신고 이후부터 조사 등 전 과정에 걸쳐 신고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법률적 검토를 위한 전문성과 직업 윤리 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대리인 요건에 대한 합리적 제한의 불가피성이 일정부분 인정됨.

- 「청탁금지법」보다 먼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²¹⁾한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이후에 도입²²⁾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 함)²³⁾의 경우에도 일관되게 비실명 대리신고의 대리인을 변호사로 규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용도 제고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 규정」²⁴⁾을 마련하고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21)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한 규정(제8조의2)은 2018년 4월 17일에 신설되어 2018년 10월 18일에 시행됨.

2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한 규정은 2022년 1월 4일에 신설되어 2022년 7월 5일에 시행됨.

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 ①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신고자 또는 신고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그 취지를 밝히고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위원회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24) 「국민권익위원회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운영규정」

제2조(구성 및 인원)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이하 "자문변호사"라 한다)는 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한변호사협회장(이하 "대한변협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업무)

- ① 자문변호사는 비실명 대리신고를 하려는 내부 신고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고 관련 법률상담 및 안내
 2. **신고의 비실명 대리**(자료 제출, 출석 또는 의견진술 등 포함)
- ② 제1항의 "내부 신고자"의 정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내부 공익신고자 정의 규정을 준용한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신고자 비밀 보장 등 법률적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대리인의 자격을 변호사로 한정하는 것이 신고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바, 비전문가 대리인 자격 확대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종합하자면, 비실명 대리신고 대리인을 변호사로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활성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비밀유지 및 법률적 대응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변호사로 대리인의 자격을 제한한 현행법의 취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징계·행정처분 감면 규정 준용 (정춘생 의원안)

□ 개정안은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하는 규정에 같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표 8] 신고자 징계·행정처분 감면 규정 준용 관련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 ③ (생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④ ----- ----- ----- ----- -----제14조제2항----- ----- ----- ----- ----- ----- ----- ----- ----- -----
⑤ ~ ⑧ (생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²⁵⁾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신고 방해 및 취소 강요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자진 신고 또는 신고로 인한 위반행위 발견 시 처벌 감면 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직접 규정하고 그밖의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관련 조항을 따르도록 제4항에 준용 규정을 둬.

[표 9] 현행법의 신고자등 보호 규정

조항	내용
제15조제1항	▪ 신고 방해 및 신고 취소 강요 금지
제15조제2항	▪ 신고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금지
제15조제3항	▪ 위반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스스로의 신고로 인해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행정처분 감면 가능
제15조제4항	▪ 그밖에 신고자 보호에 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2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2.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1조 및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공익신고자”는 “신고자”로, “공익침해행위”는 “이 법의 위반행위”로 본다.

□ 그리고, 현행법 제15조제4항에서 신고자 보호를 위해 준용하고 있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 및 그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신고자의 책임 감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하고 있음.

[표 10] 현행법 제15조제4항이 준용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

조항	주요내용
제11조	▪ 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등
제12조	▪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3조	▪ 신분보호조치
제14조제4항	▪ 책임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제14조제5항	▪ 책임감면 - 피신고자의 손해배상책임 청구 제한
제14조제6항	▪ 책임감면 - 공익신고 금지하는 단체협약, 고용계약 등 무효
제16조	▪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제17조	▪ 보호조치 신청
제18조	▪ 보호조치 신청의 각하
제19조	▪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제20조	▪ 보호조치 결정 등
제20조의2	▪ 특별보호조치
제21조	▪ 보호조치 결정 등의 확정
제22조	▪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제23조	▪ 불이익조치 추정
제24조	▪ 화해 등의 권고
제25조	▪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등의 요청

□ 개정안은 여기에 추가하여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규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도 함께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은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 같은 법 제14조제3항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징계 또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감면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는 징계권자 또는 행정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임.

[표 1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개정안이 새롭게 준용하고자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규정 중 제14조제2항과 관련해서는 현행법 제15조제3항에 그 취지가 담겨 있으면서 보다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법 상으로도 신고자의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표 1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2항 및 현행법 제15조제3항 비교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탁금지법」
제14조(책임의 감면 등) ② 공익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관계 법령 등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그러나,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3항에서 정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권은 현행 「청탁금지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용 규정 추가를 통해 신고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 조항에 더불어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징계·행정처분 감면에 관한 준용 규정을

됨으로써 신고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07